주요 노동동향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9년 1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6% 증가(전월대비 0.8%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0.6% 증가함.
  – 전월대비로도 서비스업,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0.8% 증가

○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12.4%), 전자부품(-12.6%)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7.5%), 자동차(9.4%), 기타운송장비(19.8%)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함(전월대비 0.5%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0.6%), 부동산(-2.7%) 등이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7.1%), 전문・과학・기술(3.8%)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함(전월대비 0.9% 증가).

◈ 2019년 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4.0% 증가,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3.1%)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6.5%), 의복 등 준내구재(6.4%)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4.0% 증가함(전월대비 0.2% 증가).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1.4%)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0.1%) 투자가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함(전월대비 2.2%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41.3% 감소하였음.

◈ 2019년 1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선행종합지수도 전월대비 보합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하락함.

◈ 2019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5%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변동 없음)

○ 2019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15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함(전월대비 0.4%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3.2%), 음식·숙박(2.8%), 주택·수도·전기·연료(1.5%) 등 9개 부문에서 상승, 보건(-0.5%), 통신(-2.3%), 교통(-4.2%)은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이외(-0.6%)는 하락하였으나 식품(1.0%)은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변동 없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안은 전월대비)

		연간			분기								월		
					2017				2018				2018		2019
		2016	2017	2018p	1/4	2/4	3/4	4/4	1/4	2/4	3/4	4/4p	1월	12월p	1월p
생산	전산업	3.0	2.5	1.4	4.1	2.5	4.3	-0.4	1.1	1.8	-0.1	2.6	0.8	0.4(-0.3)	0.6(0.8)
	광공업	2.2	2.4	1.3	5.2	2.4	5.4	-2.7	-1.1	2.0	0.1	4.3	1.0	0.7(-0.8)	0.1(0.5)
	제조업	2.3	2.2	1.2	5.3	2.2	5.5	-3.5	-1.4	1.9	-0.1	4.6	4.9	1.2(-0.9)	0.2(0.5)
	건설업	15.4	10.5	-5.2	18.2	14.0	12.9	0.1	0.8	-3.5	-9.7	-7.8	5.4	-9.1(2.4)	-11.8(2.1)
	서비스업	2.6	1.9	2.1	2.2	1.8	2.6	0.8	2.5	2.2	0.8	2.8	0.5	1.5(-0.1)	2.0(0.9)
소비	소비재 판매	3.9	1.9	4.2	1.4	0.9	3.4	2.2	5.3	5.0	3.8	2.9	14.0	3.0(-0.2)	4.0(0.2)
투자	설비투자	-1.3	14.1	-3.7	18.2	17.8	20.6	2.0	10.2	-4.8	-13.5	-5.9	22.2	-14.9(-2.6)	-16.6(2.2)
물가		1.0	1.9	1.5	2.2	1.9	2.2	1.4	1.1	1.5	1.6	1.8	1.3	0.8(-0.1)	0.5(0.4)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3) 2016년, 2017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포함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18년 2월, 2019년 1월, 2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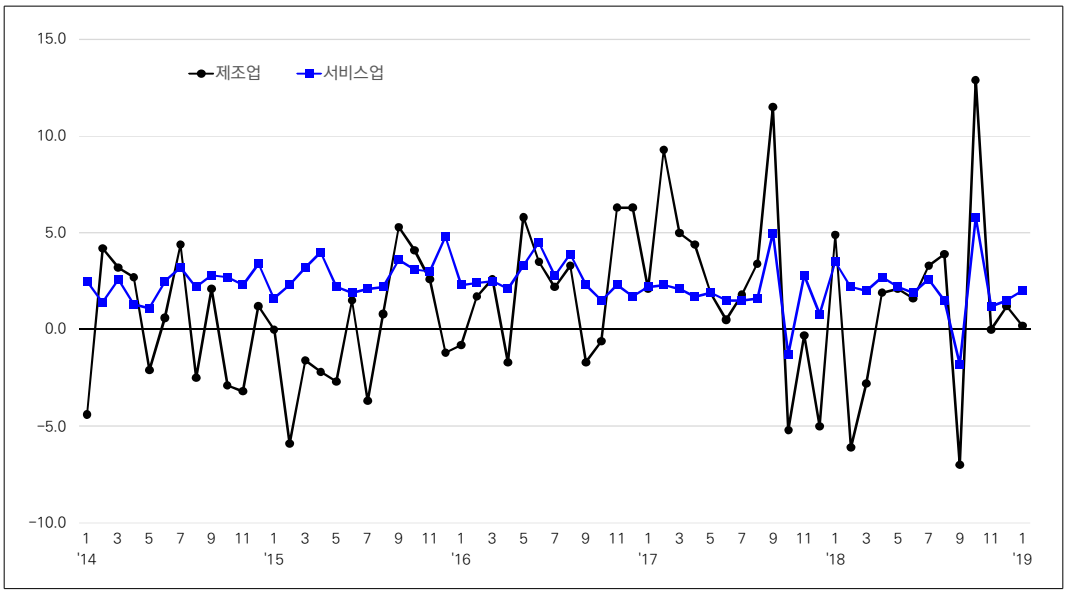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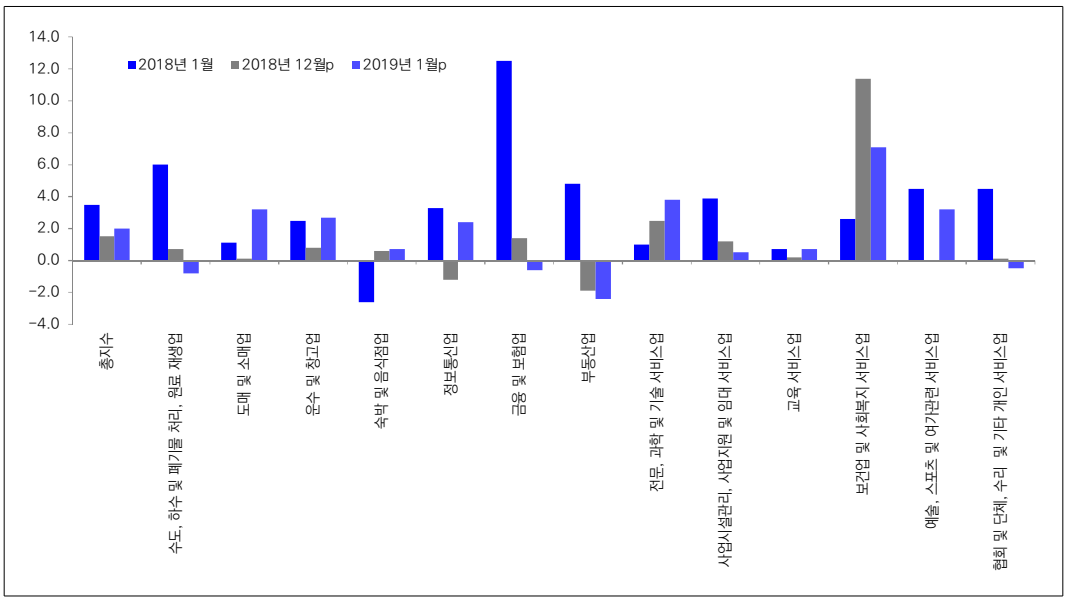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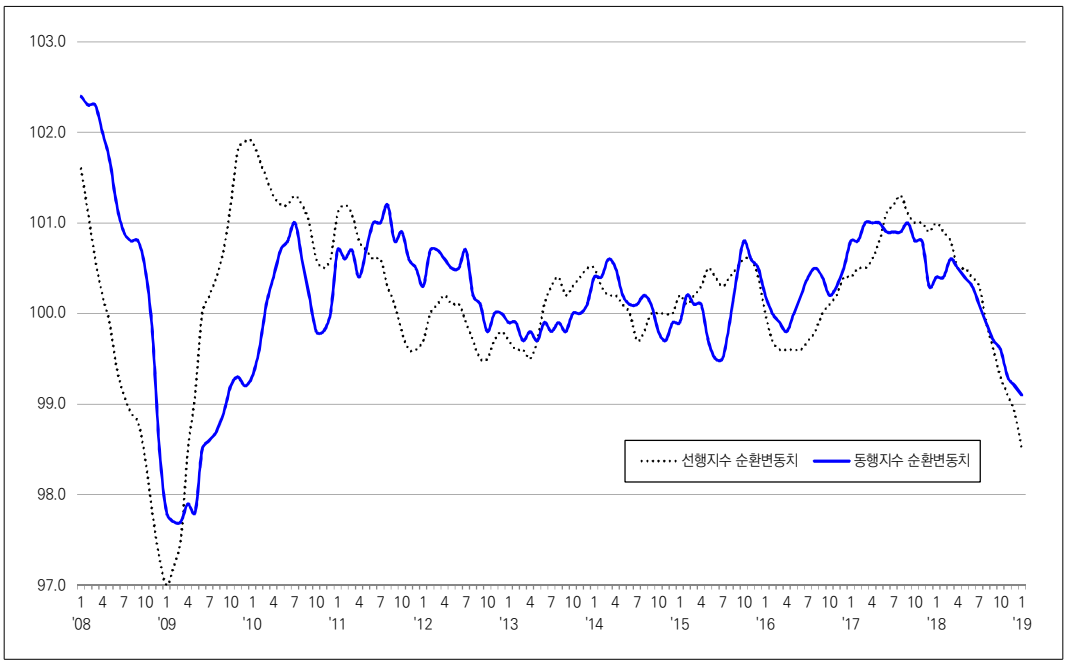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고용 동향

◈ 2월 취업자는 증가폭을 확대하여 전년동월대비 263천 명 증가

○ 2019년 2월 경제활동인구는 27,64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천 명(1.1%) 증가함.

- 취업자는 26,34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3천 명 증가하였는데, 성별로 보면 여성은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며 191천 명 증가하였고, 남성 취업자도 증가로 전환하여 전년동월대비 72천 명 증가하였음.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8천 명 증가한 1,303천 명으로 실업률은 4.7%(0.1%p 증가)로 나타남. 그중 남성 실업자(720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36천 명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한 4.5%로 나타났으며, 여성 실업자(584천 명)는 2천 명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인 5.0%를 기록했음.

○ 2019년 2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2.1%)은 0.6%p 증가했고 남성(72.8%)은 0.1%p 감소하였음.

○ 2019년 2월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함.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한 69.5%를 기록했고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증가한 49.5%를 기록했음.
- 15~64세 고용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65.8%를 기록하여 15세 이상 고용률에 비해 6.4%p 높게 나타남(그림 1 오른쪽 참조).
- 15~64세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한 75.0%를 기록하였고 여성은 0.4%p 증가한 56.5%를 기록했음.

○ 2019년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 명 감소함. 2018년 2월 이후 매월 전년동월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를 이어오다 당월 감소로 전환한 모습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육아'와 '가사'는 전년동월대비 155천 명, 재학'과 '수강'은 175천 명 감소한 반면, '쉬었음'은 139천 명 증가하고, '취업준비'도 120천 명 증가하였음(그림 2 오른쪽 참조).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2월	2월	12월	1월	2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3,606	43,931	44,182	43,818	44,093	44,316	44,319	44,382
	(증가수)	(366)	(325)	(252)	(347)	(275)	(256)	(246)	(290)
	경제활동인구	27,418	27,748	27,895	27,321	27,348	27,582	27,455	27,649
	(증가수)	(265)	(329)	(148)	(396)	(27)	(66)	(223)	(300)
	취업자	26,409	26,725	26,822	25,979	26,083	26,638	26,232	26,346
	(증가율)	(0.9)	(1.2)	(0.4)	(1.4)	(0.4)	(0.1)	(0.1)	(1.0)
	(증가수)	(231)	(316)	(97)	(364)	(104)	(34)	(19)	(263)
	(남성)	(85)	(127)	(4)	(188)	(56)	(-14)	(-79)	(72)
	(여성)	(146)	(189)	(94)	(176)	(47)	(48)	(98)	(191)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3.1	62.4	62.0	62.2	61.9	62.3
	(남성)	(74.0)	(74.1)	(73.7)	(73.4)	(72.9)	(73.0)	(72.6)	(72.8)
	(여성)	(52.2)	(52.7)	(52.9)	(51.7)	(51.5)	(51.8)	(51.7)	(52.1)
	고용률	60.6	60.8	60.7	59.3	59.2	60.1	59.2	59.4
	(남성)	(71.2)	(71.2)	(70.8)	(69.9)	(69.7)	(70.3)	(69.4)	(69.5)
	(여성)	(50.3)	(50.8)	(50.9)	(49.0)	(48.9)	(50.2)	(49.4)	(49.5)
	실업자	1,009	1,023	1,073	1,342	1,265	944	1,224	1,303
	실업률	3.7	3.7	3.8	4.9	4.6	3.4	4.5	4.7
	(남성)	(3.8)	(3.8)	(3.9)	(4.7)	(4.3)	(3.7)	(4.4)	(4.5)
	(여성)	(3.6)	(3.5)	(3.7)	(5.2)	(5.0)	(3.1)	(4.5)	(5.0)
	비경제활동인구	16,187	16,183	16,287	16,497	16,744	16,733	16,864	16,734
	(증가수)	(102)	(-5)	(104)	(-49)	(247)	(190)	(23)	(-11)
15~64세	생산가능인구	36,839	36,860	36,796	36,866	36,823	36,788	36,766	36,805
	(증가수)	(134)	(21)	(-63)	(69)	(-42)	(-55)	(-63)	(-19)
	참가율	68.7	69.2	69.3	68.8	68.6	68.9	68.7	68.8
	(남성)	(78.9)	(79.3)	(79.1)	(78.9)	(78.5)	(78.6)	(78.3)	(78.4)
	(여성)	(58.3)	(59.0)	(59.4)	(58.6)	(58.5)	(59.1)	(58.9)	(59.0)
	고용률	66.1	66.6	66.6	65.7	65.8	66.5	65.9	65.8
	(남성)	(75.9)	(76.3)	(75.9)	(75.4)	(75.4)	(75.7)	(75.0)	(75.0)
	(여성)	(56.1)	(56.9)	(57.2)	(55.9)	(56.1)	(57.1)	(56.8)	(56.5)
	취업자	24,342	24,559	24,511	24,218	24,232	24,455	24,246	24,233
	(증가수)	(149)	(218)	(-48)	(281)	(15)	(-73)	(-125)	(0)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9. 3), 『2019년 2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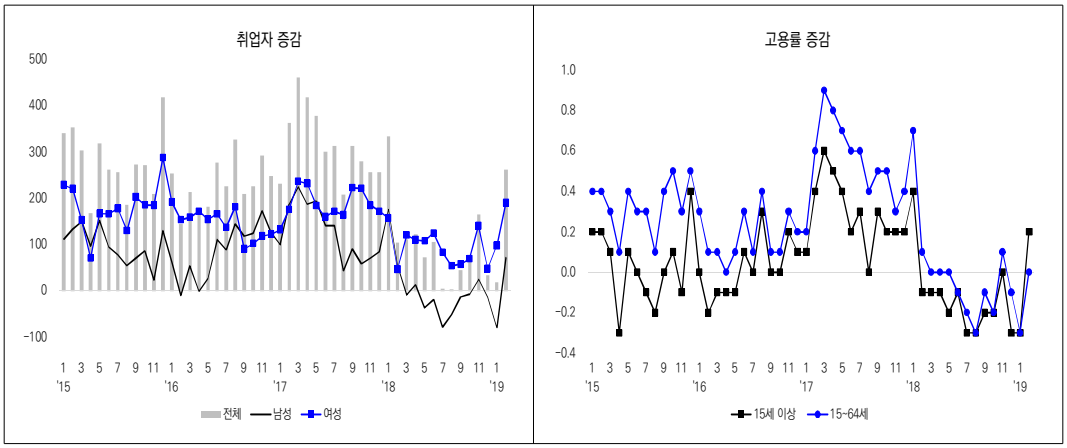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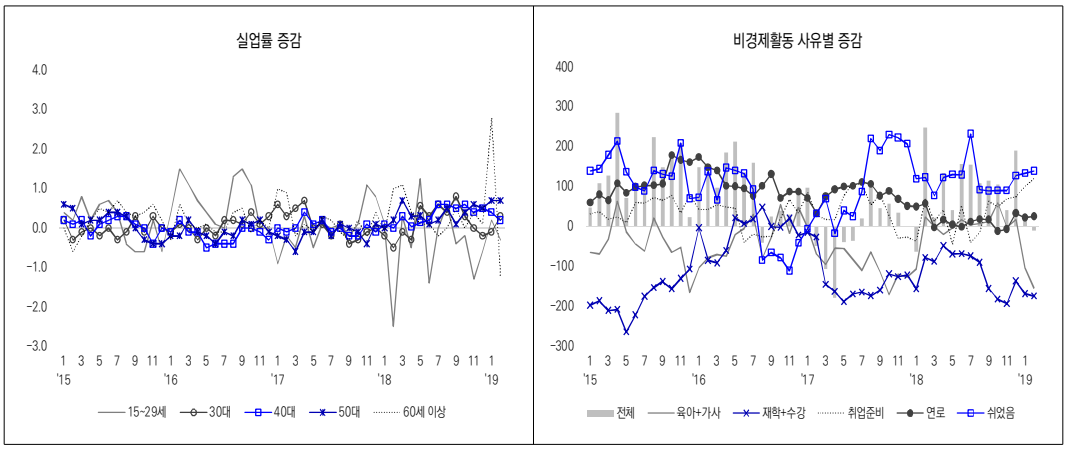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60세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397천 명 증가

○ 2019년 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를 연령별로 보면 20대(34천 명, 0.9%), 50대(88천 명, 1.4%), 60세 이상(397천 명, 10.6%)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30대(-115천 명, -2.1%), 40대(-128천 명, -1.9%) 연령층은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감소함.

– 20대 연령층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는 전월과 같은 수준인데, 20대 초반 연령

층은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2월 23천 명 감소, 1월 71천 명 감소)되었지만, 20대 후반 취업자의 증가폭도 축소된 영향(2월 56천 명 증가, 1월 105천 명 증가)

- 30대 초반(65천 명 감소)과 30대 후반(50천 명 감소)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를 기록하며, 30대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40대 취업자 역시 전년동월대비 128천 명 감소하며 2015년 11월 이후 취업자 감소가 지속
- 최근 몇 년간 취업자 증가 추세를 유지해 오고 있는 60대 연령층은 2019년 2월 증가의 규모가 더욱 크게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397천 명 증가(1월 264천 명 증가)를 기록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2월	2월	12월	1월	2월
전 체	26,409 (231)	26,725 (316)	26,822 (97)	25,979 (364)	26,083 (104)	26,638 (34)	26,232 (19)	26,346 (263)
15~19세	244 (-1)	247 (3)	205 (-42)	274 (2)	232 (-42)	184 (-33)	202 (-31)	219 (-13)
20~29세	3,664 (44)	3,660 (-3)	3,699 (39)	3,568 (-3)	3,654 (86)	3,700 (71)	3,689 (34)	3,687 (34)
20~24세	1,402 (0)	1,368 (-34)	1,292 (-77)	1,323 (-40)	1,287 (-36)	1,251 (-72)	1,259 (-71)	1,265 (-23)
25~29세	2,262 (44)	2,292 (30)	2,408 (116)	2,245 (37)	2,366 (122)	2,449 (142)	2,430 (105)	2,423 (56)
30~39세	5,672 (-57)	5,643 (-29)	5,582 (-61)	5,630 (-44)	5,596 (-34)	5,548 (-103)	5,501 (-126)	5,482 (-115)
30~34세	2,732 (-156)	2,593 (-139)	2,512 (-81)	2,642 (-153)	2,529 (-114)	2,492 (-64)	2,464 (-79)	2,464 (-65)
35~39세	2,940 (98)	3,050 (110)	3,070 (20)	2,988 (110)	3,067 (80)	3,057 (-39)	3,037 (-47)	3,017 (-50)
40~49세	6,832 (-59)	6,783 (-50)	6,666 (-117)	6,765 (-30)	6,658 (-107)	6,611 (-135)	6,539 (-166)	6,531 (-128)
50~59세	6,150 (82)	6,302 (152)	6,346 (44)	6,178 (182)	6,213 (35)	6,369 (31)	6,311 (44)	6,301 (88)
60세 이상	3,848 (223)	4,090 (242)	4,324 (234)	3,565 (256)	3,730 (165)	4,226 (203)	3,990 (264)	4,126 (397)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19. 3), 『2019년 2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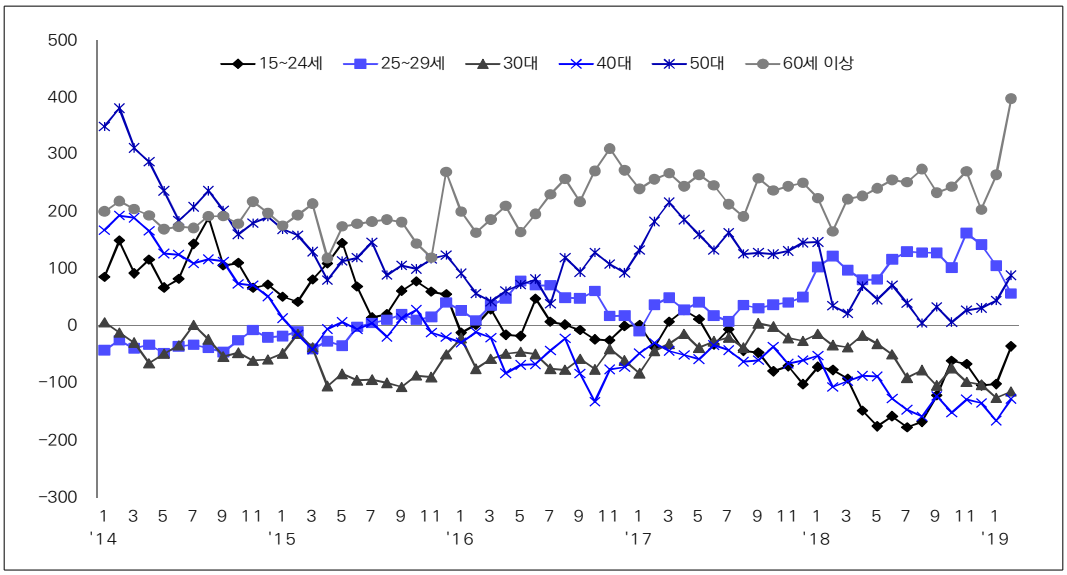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30대 여성 혼인여부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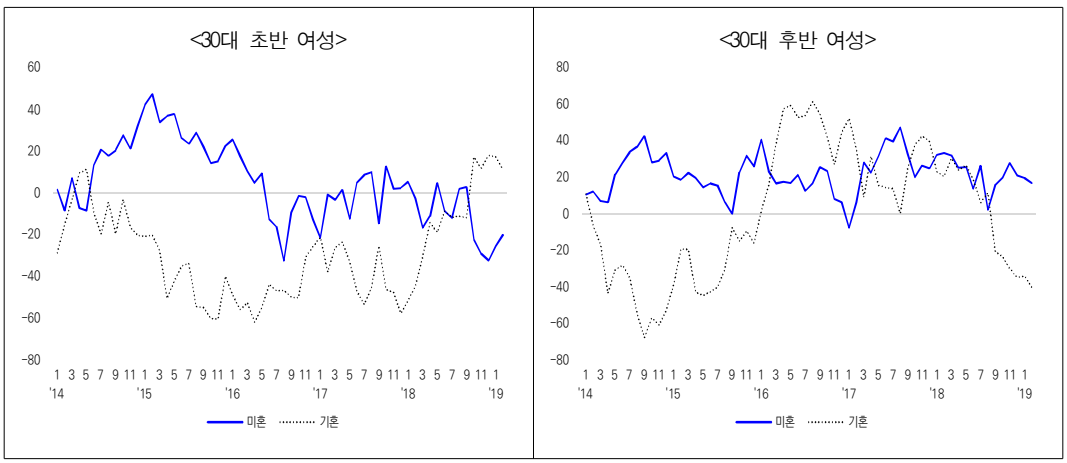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

○ 2019년 2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89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6천 명(1.5%)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6,45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천 명(-0.5%) 감소함.

– 2019년 2월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96천 명 증가하였는데,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299천 명, 40천 명 증가하고 임시근로자는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어 전년동월대비 43천 명 감소한 영향

– 비임금근로자는 전월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폭이 축소되어 전년동월대비 33천 명 감소함(1월 73천 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0천 명 감소하였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되어 4천 명 증가를 기록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도 13천 명 증가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2월	2월	12월	1월	2월
전 체	26,409 (231)	26,725 (316)	26,822 (97)	25,979 (364)	26,083 (104)	26,638 (34)	26,232 (19)	26,346 (263)
비임금근로자	6,740 (-36)	6,791 (51)	6,739 (-52)	6,546 (209)	6,483 (-63)	6,493 (-94)	6,425 (-73)	6,450 (-3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84 (-25)	1,608 (24)	1,651 (43)	1,590 (76)	1,655 (65)	1,616 (-26)	1,614 (-49)	1,605 (-5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30 (17)	4,074 (44)	3,987 (-87)	3,978 (137)	3,872 (-106)	3,879 (-69)	3,858 (-12)	3,876 (4)
무급가족종사자	1,126 (-27)	1,110 (-17)	1,101 (-9)	978 (-4)	957 (-21)	997 (0)	953 (-12)	970 (13)
임금근로자	19,669 (267)	19,934 (265)	20,084 (150)	19,433 (155)	19,600 (167)	20,146 (128)	19,807 (92)	19,896 (296)
상용근로자	13,062 (346)	13,428 (366)	13,772 (345)	13,247 (300)	13,680 (433)	13,934 (333)	13,923 (279)	13,979 (299)
임시근로자	5,124 (10)	4,992 (-132)	4,851 (-141)	4,745 (-162)	4,563 (-182)	4,672 (-256)	4,455 (-212)	4,520 (-43)
일용근로자	1,483 (-88)	1,514 (31)	1,460 (-54)	1,441 (17)	1,356 (-85)	1,540 (51)	1,429 (25)	1,397 (40)
1~17시간	1,267 (50)	1,362 (95)	1,520 (158)	1,293 (115)	1,349 (56)	1,545 (39)	1,517 (135)	1,663 (314)
18~35시간	3,220 (432)	3,051 (-169)	3,690 (639)	2,750 (127)	2,675 (-75)	3,163 (333)	3,039 (285)	3,112 (437)
36시간 이상	21,509 (-257)	21,930 (421)	21,209 (-720)	21,398 (179)	21,538 (140)	21,616 (-334)	21,101 (-338)	21,095 (-443)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0	42.8	41.5	42.8	42.4	41.5	41.1	40.9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19. 3), 『2019년 2월 고용동향』.

〔그림 5〕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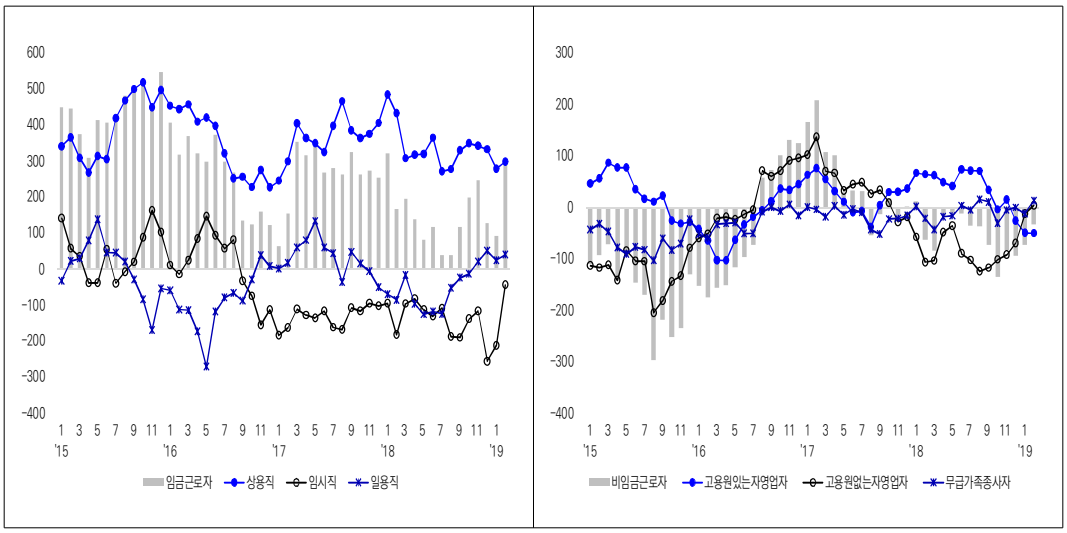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취업시간이 1~17시간인 취업자는 2월 전년동월대비 314천 명 증가하고, 취업시간이 18~35시간인 취업자도 437천 명 증가하여 전월보다 증가폭을 큰 폭으로 확대한 반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크게 줄어 전년동월대비 443천 명 감소를 나타냄.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 큰 폭으로 증가

○ 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7천 명), 농림어업(117천 명), 정보통신업(72천 명) 순으로 증가하고, 제조업(151천 명), 도매 및 소매업(60천 명)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월 67천 명, 1월 39천 명 증가)은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숙박 및 음식점업(2월 1천 명 증가, 1월 40천 명 감소)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월 17천 명 증가, 1월 19천 명 감소)에서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로 전환된 모습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월 29천 명 감소, 1월 76천 명 감소)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월 5천 명 감소, 1월 23천 명 감소) 그리고 건설업(2월 3천 명 감소, 1월 19천 명 감소)에서 취업자 감소폭의 축소가 관찰되고, 금융 및 보험업(2월 38천 명 감소, 1월 1천 명 감소)은 감소의 규모가 확대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2016	2017	2018	2017	2018		2019	
				2월	2월	12월	1월	2월
전 산 업	26,409 (231)	26,725 (316)	26,822 (97)	25,979 (364)	26,083 (104)	26,638 (34)	26,232 (19)	26,346 (263)
농림어업	1,273 (-65)	1,279 (6)	1,340 (62)	956 (-11)	997 (41)	1,169 (94)	1,093 (107)	1,114 (117)
광업	19 (5)	23 (4)	19 (-4)	21 (4)	21 (0)	16 (-7)	16 (-5)	15 (-7)
제조업	4,584 (-21)	4,566 (-18)	4,510 (-56)	4,549 (-99)	4,562 (14)	4,491 (-127)	4,439 (-170)	4,411 (-151)
전기 · 가스 · 증기	76 (-3)	72 (-4)	70 (-2)	77 (1)	75 (-2)	64 (-7)	64 (-7)	70 (-4)
수도 · 원료재생	113 (8)	115 (2)	127 (12)	112 (4)	119 (7)	129 (13)	134 (19)	126 (8)
건설업	1,869 (15)	1,988 (119)	2,034 (47)	1,899 (150)	1,964 (64)	2,074 (35)	1,969 (-19)	1,961 (-3)
도매 및 소매업	3,754 (-63)	3,795 (41)	3,723 (-72)	3,831 (68)	3,739 (-92)	3,711 (-63)	3,703 (-67)	3,679 (-60)
운수 및 창고업	1,426 (-2)	1,405 (-22)	1,407 (2)	1,405 (-33)	1,405 (1)	1,423 (14)	1,417 (-9)	1,407 (2)
숙박 및 음식점업	2,291 (96)	2,288 (-3)	2,243 (-45)	2,283 (57)	2,261 (-22)	2,240 (-39)	2,246 (-40)	2,262 (1)
정보통신업	784 (10)	783 (-1)	837 (55)	771 (16)	802 (31)	880 (94)	883 (94)	874 (72)
금융 및 보험업	803 (4)	794 (-9)	840 (46)	784 (-4)	839 (56)	830 (14)	812 (-1)	802 (-38)
부동산업	483 (21)	540 (57)	528 (-12)	523 (42)	515 (-8)	535 (-2)	520 (8)	523 (8)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1,101 (47)	1,092 (-9)	1,096 (4)	1,105 (21)	1,082 (-23)	1,097 (6)	1,135 (39)	1,149 (67)
사업시설 · 사업지원 · 임대	1,391 (60)	1,374 (-17)	1,311 (-63)	1,342 (-8)	1,311 (-31)	1,279 (-89)	1,264 (-76)	1,282 (-29)
공공행정 · 국방 · 사회보장	1,004 (55)	1,058 (55)	1,110 (52)	938 (26)	997 (59)	1,062 (-8)	972 (-19)	1,014 (17)
교육서비스업	1,862 (27)	1,907 (45)	1,847 (-60)	1,876 (63)	1,822 (-54)	1,853 (-30)	1,837 (12)	1,837 (1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861 (80)	1,921 (61)	2,046 (125)	1,812 (73)	1,836 (25)	2,058 (154)	2,004 (179)	2,073 (237)
예술 · 스포츠 · 여가	407 (-21)	428 (22)	445 (16)	415 (15)	456 (41)	444 (-6)	438 (-23)	451 (-5)
협회 · 단체 · 수리 · 기타	1,224 (-8)	1,222 (-3)	1,236 (14)	1,202 (-8)	1,220 (19)	1,233 (13)	1,234 (10)	1,246 (26)
가구 내 고용 · 자가소비	70 (-13)	64 (-5)	48 (-17)	69 (-7)	52 (-17)	44 (-19)	43 (-11)	45 (-8)
국제 및 외국기관	16 (-2)	12 (-5)	7 (-5)	10 (-6)	8 (-2)	7 (-3)	8 (-1)	8 (-1)

주 : 1)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2) 10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9. 3), 『2019년 2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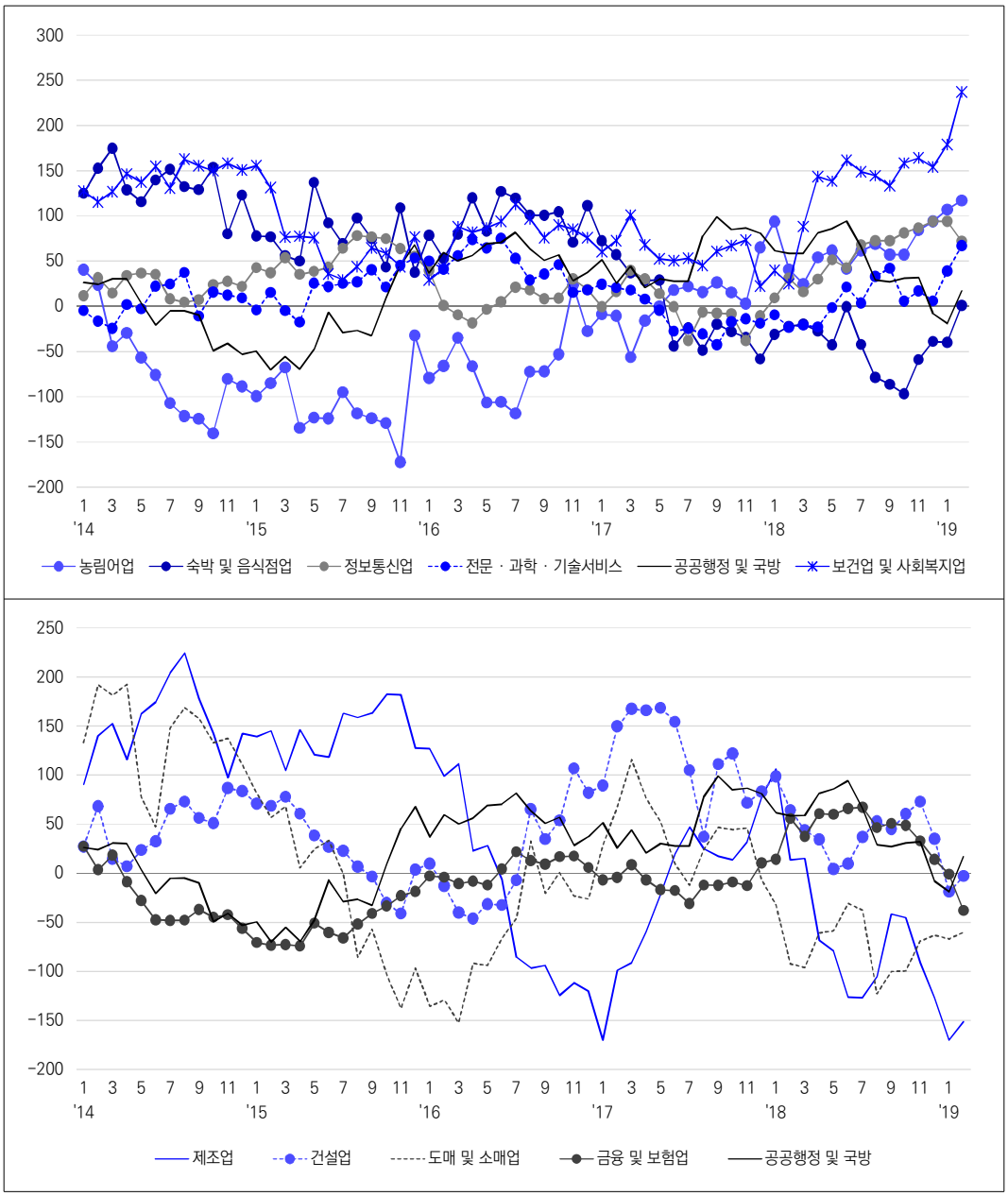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기쁨, 동향분석실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8년 명목임금은 전년대비 5.3% 증가

○ 2018년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76천 원(5.3% ↑)임.

– 2018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대비 5.1% 상승한 3,592천 원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5.5% 상승한 1,428천 원임.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3.7%(전년대비 2.4%p 상승).

◈ 2018년 협약임금 인상률 4.2%

○ 2018년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2%로 전년대비 0.6%p 상승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37 (3.4)	2,904 (2.4)	2,991 (3.0)	3,106 (3.8)	3,207 (3.3)	3,336 (5.3)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46 (3.3)	3,117 (2.3)	3,204 (2.8)	3,331 (4.0)	3,418 (2.6)	3,547 (5.1)
	정액급여	2,433 (3.8)	2,506 (3.0)	2,580 (3.0)	2,668 (3.4)	2,764 (3.6)	2,877 (4.6)
	초과급여	154 (1.3)	170 (10.5)	181 (6.2)	189 (4.2)	190 (0.6)	196 (3.4)
	특별급여	458 (1.3)	440 (-4.0)	443 (0.6)	475 (7.2)	464 (-2.2)	474 (8.4)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47 (3.3)	1,253 (0.5)	1,281 (2.2)	1,288 (0.6)	1,353 (5.1)	1,423 (5.5)
소비자물가지수		98.3 (1.3)	99.1 (1.3)	100.2 (0.7)	101.6 (1.0)	103.0 (1.9)	104.7 (1.5)
실질임금증가율		2.1	1.1	2.3	2.8	1.3	3.7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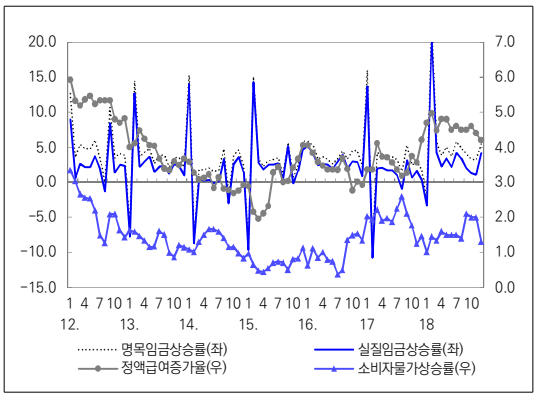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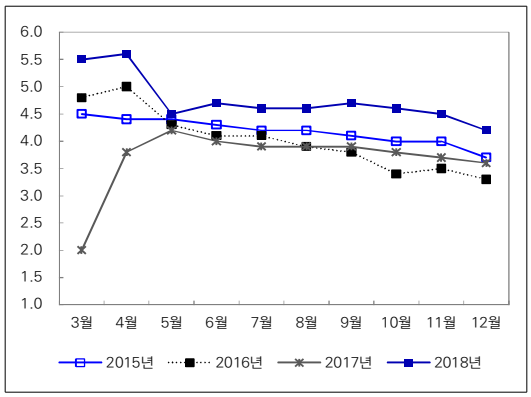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8년 대규모 사업체의 큰 임금인상폭

○ 2018년 중소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6%인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는 전년대비 6.0%p 상승한 6.5%임.

〈표 2〉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	2016	2017		2018	
				1~12월	12월	1~12월	12월
중소규모	소 계	2,661 (3.2)	2,759 (3.7)	2,886 (4.6)	3,233 (4.3)	3,019 (4.6)	3,344 (3.4)
	상용임금총액	2,661 (3.2)	2,759 (3.7)	3,082 (4.0)	3,469 (3.6)	3,217 (4.4)	3,581 (3.2)
	정액급여	2,414 (2.7)	2,495 (3.3)	2,602 (4.3)	2,723 (4.5)	2,723 (4.7)	2,845 (4.5)
	초과급여	148 (5.2)	160 (7.5)	164 (2.5)	163 (0.2)	172 (4.8)	176 (8.2)
	특별급여	291 (4.1)	310 (6.7)	316 (2.0)	584 (0.2)	322 (1.9)	560 (-4.1)
	비상용임금총액	1,277 (2.4)	1,286 (0.7)	1,350 (5.0)	1,405 (6.2)	1,422 (5.3)	1,482 (5.4)
대규모	소 계	4,849 (3.7)	4,959 (2.3)	4,983 (0.5)	5,681 (-4.1)	5,305 (6.5)	6,284 (10.6)
	상용임금총액	5,017 (3.9)	5,131 (2.3)	5,145 (0.3)	5,900 (-4.3)	5,474 (6.4)	6,529 (10.7)
	정액급여	3,438 (5.1)	3,519 (2.3)	3,598 (2.3)	3,932 (4.3)	3,735 (3.8)	4,029 (2.5)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24 (-2.1)	308 (-7.6)	324 (0.0)	323 (4.9)
	특별급여	1,230 (-0.7)	1,281 (4.2)	1,223 (-4.5)	1,660 (-19.6)	1,415 (15.7)	2,176 (31.1)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400 (6.9)	1,371 (5.1)	1,509 (7.8)	1,499 (9.3)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좌, 누계)과 특별급여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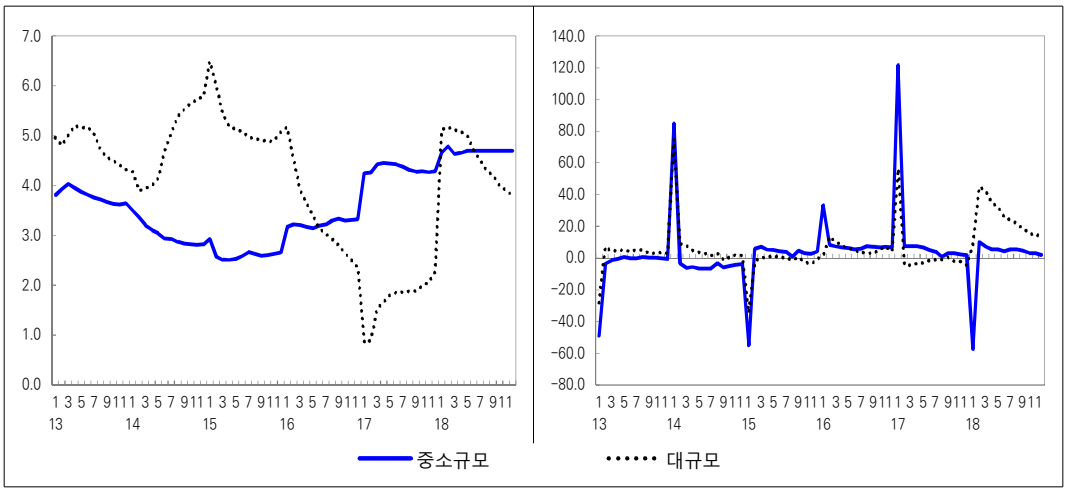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은 전년대비 4.4%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300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은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확대로 전년대비 6.1%p 상승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이 증가한 것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2016~2017년) 및 자동차관련산업(2017~2018년)의 임금협상타결금이 2018년에 지급된 점과 반도체, 석유, 화학, 항공운송, 금융보험업 등의 경영성과급과 특별상여금이 다른 해에 비해 과지급된 데 기인함.

◈ 20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8년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전년대비 8.1% 상승함.

- 이외에도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6.8%)이 평균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함. 반면 전기·가스·수도 및 증기산업과 교육서비스업은 2%대의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보임.
- 2018년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수도 및 증기산업(6,436천 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산업은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1,757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6	2017		2018	
		1～12월	12월	1～12월	12월
전 산 업	3,106 (3.8)	3,207 (3.3)	3,803 (1.8)	3,376 (5.3)	3,808 (5.5)
광업	3,678 (2.7)	3,713 (1.0)	4,229 (-2.7)	3,835 (3.3)	3,897 (2.5)
제조업	3,603 (4.1)	3,690 (2.4)	9,284 (-2.0)	3,930 (6.5)	4,671 (10.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300 (8.2)	6,281 (-0.3)	3,506 (0.0)	6,436 (2.5)	9,643 (3.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978 (5.3)	3,089 (3.7)	2,803 (1.4)	3,288 (6.5)	4,008 (14.3)
건설업	2,507 (3.1)	2,624 (4.7)	3,530 (5.4)	2,784 (6.1)	2,985 (6.5)
도매 및 소매업	2,880 (3.9)	3,049 (5.8)	3,645 (6.4)	3,214 (5.4)	3,617 (2.5)
운수업	3,023 (4.9)	3,156 (4.4)	1,661 (6.5)	3,357 (6.4)	3,814 (4.6)
숙박 및 음식점업	1,570 (1.5)	1,626 (3.6)	4,505 (3.8)	1,757 (8.1)	1,783 (7.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78 (3.3)	4,122 (3.6)	7,141 (6.1)	4,277 (3.8)	4,477 (-0.6)
금융 및 보험업	5,499 (4.0)	5,706 (3.8)	2,652 (8.3)	6,026 (5.6)	7,059 (-1.1)
부동산 및 임대업	2,383 (5.7)	2,446 (2.7)	5,158 (2.2)	2,600 (6.3)	2,800 (5.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44 (5.8)	4,492 (1.1)	2,236 (-5.2)	4,757 (5.9)	5,732 (11.1)
사업서비스업	2,049 (4.0)	2,088 (1.9)	3,299 (1.9)	2,203 (5.5)	2,332 (4.3)
교육서비스업	3,231 (1.1)	3,316 (2.6)	2,841 (6.7)	3,397 (2.5)	3,343 (1.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75 (3.4)	2,671 (3.7)	3,000 (2.0)	2,799 (4.8)	2,955 (4.0)
여가관련 서비스업	2,353 (5.2)	2,512 (6.8)	2,468 (9.7)	2,684 (6.8)	3,191 (6.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67 (5.4)	2,240 (3.4)	#VALUE! (1.4)	2,401 (7.2)	2,721 (10.2)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3.9시간으로 전년대비 1.4% 감소

○ 2018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8시간 감소함.

– 근로자 1인당 전년대비 2.4시간 감소하였으며, 상용직은 171.2시간, 비상용직은 98.6시간으로 각각 2.1시간, 6.1시간 감소함.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누계평균) 추이

(단위 :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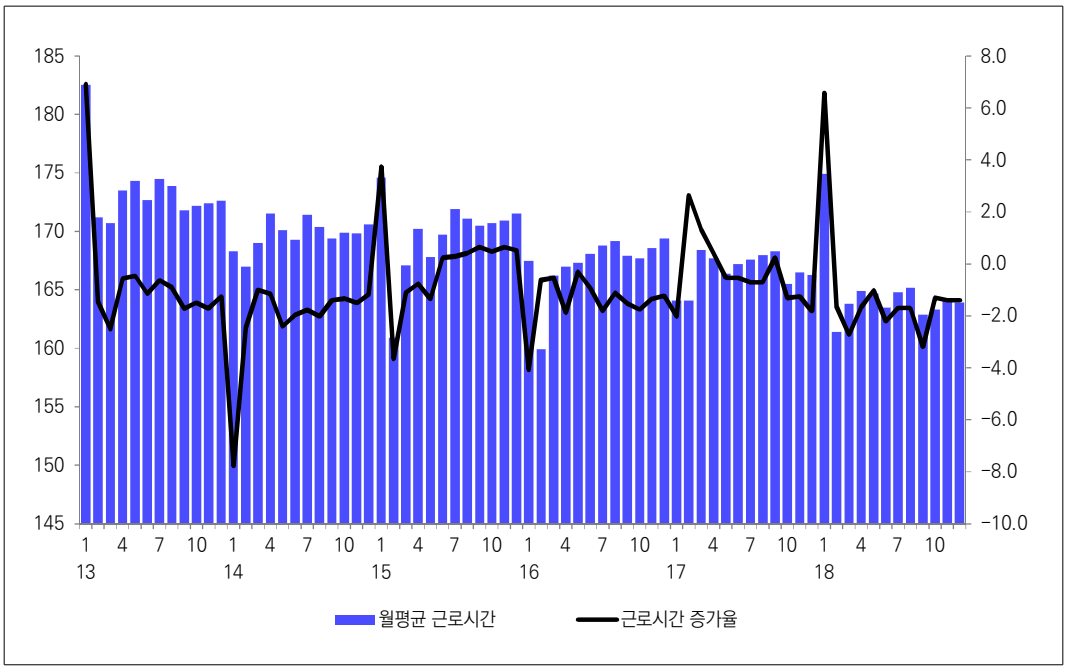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더 감소

○ 2018년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64.1시간으로 전년대비 2.5시간 감소함.

-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163.3시간으로 전년대비 1.1시간 감소하였으며, 2018년 근로시간의 감소는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0.1% 감소한 데 영향이 컸음.
- 2018년 하반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6시간 감소한 11.7시간이었으며, 제조업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20.1시간으로 1.8시간 감소함. 하반기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상위 5개 산업(중분류 기준: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이 모두 제조업이었으며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초과근로시간은 경기상황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

〈표 4〉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6	2017		2018	
			1～12월	12월	1～12월	12월
중소규모	전체 근로시간	169.8(-1.2)	166.6(-1.9)	164.2(-7.9)	164.1(-1.5)	161.3(-1.8)
	상용 총근로시간	178.4(-0.7)	174.4(-2.2)	171.8(-8.6)	172.1(-1.3)	169.5(-1.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8.3(-0.9)	164.7(-2.1)	162.6(-8.5)	163.0(-1.0)	160.3(-1.4)
	상용 초과근로시간	10.1(2.0)	9.7(-4.0)	9.3(-7.9)	9.1(-6.2)	9.2(-1.1)
	비상용근로시간	108.6(-5.9)	105.7(-2.7)	104.8(-4.0)	99.2(-6.1)	96.8(-7.6)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6.9(-1.6)	164.4(-1.5)	160.4(-7.4)	163.3(-0.7)	159.2(-0.7)
	상용 총근로시간	170.8(-1.7)	167.7(-1.8)	164.6(-7.7)	166.6(-0.7)	163.2(-0.9)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7.0(-0.8)	155.4(-1.0)	153.3(-7.2)	154.9(-0.3)	151.8(-1.0)
	상용 초과근로시간	13.7(-11.0)	12.3(-10.2)	11.2(-14.5)	11.7(-4.9)	11.4(1.8)
	비상용근로시간	85.5(-1.6)	90.3(5.6)	79.2(2.2)	89.2(-1.2)	81.8(3.3)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출판 · 영상, 금융 · 보험, 전문 · 과학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대비 감소

○ 20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근로시간 감소폭이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178.9시간으로 나타남.

– 2018년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으로 138.5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6	2017		2018	
		1~12월	12월	1~12월	12월
전 산 업	169.4 (-1.2)	166.3 (-1.8)	163.6 (-7.8)	163.9 (-1.4)	161.0 (-1.6)
광업	177.9 (-1.0)	175.8 (-1.2)	177.8 (-6.3)	176.6 (0.5)	176.4 (-0.8)
제조업	183.1 (-1.0)	179.8 (-1.8)	176.2 (-8.5)	177.1 (-1.5)	173.8 (-1.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67.7 (-1.9)	164.9 (-1.7)	166.2 (-5.9)	162.1 (-1.7)	161.8 (-2.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1 (-0.5)	177.1 (0.0)	176.3 (-5.8)	177.8 (0.4)	176.9 (0.3)
건설업	142.0 (-1.3)	141.9 (-0.1)	139.4 (-5.6)	138.5 (-2.4)	135.9 (-2.5)
도매 및 소매업	170.2 (-1.9)	167.6 (-1.5)	165.6 (-7.1)	165.2 (-1.4)	163.1 (-1.5)
운수업	172.9 (-0.9)	169.2 (-2.1)	168.1 (-6.5)	166.5 (-1.6)	163.7 (-2.6)
숙박 및 음식점업	165.7 (-3.9)	160.4 (-3.2)	159.4 (-6.5)	159.7 (-0.4)	158.9 (-0.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2.8 (-0.7)	160.9 (-1.2)	158.0 (-7.8)	161.6 (0.4)	157.9 (-0.1)
금융 및 보험업	162.9 (-0.9)	160.5 (-1.5)	156.9 (-8.8)	160.9 (0.2)	157.0 (0.1)
부동산 및 임대업	189.0 (-1.3)	184.9 (-2.2)	183.6 (-6.8)	178.9 (-3.2)	177.0 (-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2.9 (-1.2)	160.1 (-1.7)	156.2 (-8.7)	160.4 (0.2)	155.5 (-0.4)
사업서비스업	170.2 (-0.6)	165.1 (-3.0)	164.9 (-8.0)	163.2 (-1.2)	160.8 (-2.5)
교육서비스업	147.5 (-2.1)	144.4 (-2.1)	139.5 (-9.2)	142.3 (-1.5)	137.0 (-1.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8.2 (-1.5)	164.5 (-2.2)	161.5 (-8.7)	162.5 (-1.2)	160.0 (-0.9)
여가관련 서비스업	160.2 (0.2)	159.5 (-0.4)	159.3 (-4.6)	157.7 (-1.1)	155.7 (-2.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6 (-0.5)	164.2 (-2.0)	164.3 (-6.2)	162.0 (-1.3)	160.7 (-2.2)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19년 2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151건
  – 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건수(134건)보다 17건 많은 수치임.

○ 2019년 2월 조정성립률 54.6%
  – 2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49%에 비해 5.6%p 높아진 수치임.

〈표 1〉 2018년, 2019년 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9. 2	151	123	59	18	41	49	5	44	3	12	28	54.6
2018. 2	134	112	49	19	30	51	3	48	4	8	22	4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19년 2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4,206건
  – 2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3,824건)보다 382건 높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3.2%(278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6.8%(1,827건)를 차지함.

〈표 2〉 2018년, 2019년 2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9. 2	4,206	2,105	249	29	350	122	791	564	2,101
2018. 2	3,824	1,970	208	36	309	148	713	556	1,85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19년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108건

–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123건)보다 15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9.7%(29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0.3%(44건)를 차지함.

〈표 3〉 2018년, 2019년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9. 2	108	73	27	2	8	3	33	0	35
2018. 2	123	88	42	2	16	8	20	0	3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경사노위,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 … 실업급여 현실화

○ 경사노위 사회안전망 개선위 합의문 채택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3월 6일 경사노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였음.

–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급여(1인 가구 기준 월 51만 2,102원)로, 수급 기간은 6개월임.

– 향후 타 지원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음.

〈표 4〉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 원칙 합의 주요 내용

합의안	주요 합의 사항
첫째, 고용보험제도를 내실화한다.	○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및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2019년 실업급여 수준 : 하루 기준, 상한액 66,000원/하한액 60,120원(최저임금 90%*8시간)) ○ 모성보호 급여사업에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소득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함.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입 현황 : 2019년 1천4백억 원 반영(9.6% 수준))

〈표 4〉의 계속

합의안	주요 합의 사항
둘째,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한다.	○ 저소득층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함.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수급기간)은 6개월로 하는 등 제도의 주요 얼개에 대한 원칙을 정했음. (지원금액 참고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512,102원)
셋째,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 고용서비스 기관 간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구직자가 원스톱 수준의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데 합의했음. (OECD 주요국 공공고용서비스 현황(2014년 기준, 직원 1인당 구직자수) : 독일(44.8), 영국(22.3), 프랑스(88.6), 일본(90.4), 한국(605.5))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이번 합의는 2018년 8월 21일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도출 이후, 구체적 내용을 담기 위한 첫 번째 후속 합의문(안)이며, 추후 건강보험제도개선 · 빈곤대책 등 사회안전망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018. 7. 12. 발족하였으며, 2019. 7. 11.까지 운영될 예정임(필요시 1년 이내 운영기간 연장 가능)	

자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3. 6.자.

◈ 택시 · 카풀 대타협기구 합의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내 출시

–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3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시 ·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서비스를 허용하는 데 합의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마련했음.

〈표 5〉국내 카풀 서비스 관련 일지

국내 카풀 서비스 관련 일지
2018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카풀업체 럭시 252억 원에 인수
8월 택시업계, 카풀 시간 제한 요구 수용되지 않자 논의 전면 중단
10월 카카오 카풀 기사 회원 모집 시작
택시업계, 카카오 카풀 진출 반대 총파업
11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출범 및 간담회 진행
12월 택시단체, 카카오T 택시 호출 거부 선언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분신 사망사건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 철회
2019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3월 7일 대타협기구, 출퇴근 시간 카풀 제한적 허용에 합의

자료 : 경향비즈, 2019. 3. 8.자.

-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여객운수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함.
- 또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에 합의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음.
- 이 같은 결과를 끝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해산하되, 민주당과 정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시 구성해 택시업계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음.

◈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1만 2,000명 전원 정규직으로

○ 노사 "7월 1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설립 않고 본사 편입

-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는 2월 18일 '2019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하였고,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1만 2,000여 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 노사는 홈플러스에서 12개월 이상 일한 무기계약직의 임금·처우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
- 홈플러스는 이에 앞서 2018년 7월과 11월 홈플러스스토어즈(주)의 무기계약직 사원 430여 명과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사원 6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가 있음.
-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점포 업무에 종사하는 계산직, 점포관리, 영업직 등 모든 노동자가 대상에 포함되었음.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2018 임단협 가결

○ 조합원 50.9% 찬성 … 대우조선 인수반대 쟁의행위 51.6% 찬성

- 2월 20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인수반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됨.
- 기본급 2만 2,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는 전체 조합원 8,546명 중 7,734명이 투표해 50.9%(3,939명)가 찬성했고 반대(3,738명)는 48.3%를 기록함.
- 현대일렉트릭은 기본급을 1만 7,000원으로 인상한 2차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54%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 같은 날 함께 실시된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투표 조합원 9,061명 중 5,384명(51.6%)이 찬성했고, 반대는 3,606명(34.6%)이었음.

〈표 6〉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관련 노사 입장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관련 노사 입장	
노	사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결국 조선산업 붕괴로 이어지고, 모든 짐이 노동자들에게 지워지게 될 것."[1]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 : "부산 · 경남 조선 기자재 벨트는 연 3조가 넘는 기자재를 대우조선에 납품하고 있어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은 지역 경제 몰락을 의미한다", "지역 기자재를 당분간 공급하게 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그룹 체계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경남지역 경제는 대우조선 매각에 따라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2]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 : "최근 수주상황이라든지 가동률 부문이 어느 정도 정상화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가정하에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존에 생산성을 유지해 주고, 기업결합을 하게 되면 대우조선만 아니라 현장이 안정되고 생산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할 것."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 : "협력사 때문에 지역에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우조선 협력업체의 3분의 3이 우리 그룹과 거래하고 있다", "가능하면 기존의 협력업체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3]

자료 : 1) 매일노동뉴스, 2019. 3. 11.자.
2) 경남도민일보, 2019. 3. 11.자.
3) 연합인포맥스, 2019. 3. 8.자.

◈ 금속노조, 올해 임금 12만 3,526원 인상 요구

○ 격차 해소 위한 임금인상 요구안도 함께 … 현대 · 기아차지부 '3만 1,946원 특별요구'

– 2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4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였음.

– 금속노조는 전체 사업장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액 하한선을 12만 3,526원으로 결정했고, 이 금액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 △물가상승률 전망치(1.6%) △노동소득분배 개선분(1.5%)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실태 등을 반영한 결과임.

–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모든 사업장과 똑같은 임금인상안 12만 3,526원을 요구하지만, 이 중 3만 1,946원(1.5%)을 격차 해소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표 7〉 금속노조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

금속노조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		
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액	비고
금속노조 모든 사업장 (현대 · 기아차 제외)	12만 3,526원	기본급평균 5.8%(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1.6% + 노동소득분배개선분 1.5%)
현대 · 기아차	12만 3,526원	기본급 인상요구 9만 1,580원
		격차해소 특별요구 3만 1,946원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임금인상 묶음요구) -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및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 적용여부 노사합동 조사 - 인상액 차이 3만 1,946원(1.5%) 원청사에 특별요구 및 쟁취	

자료 : 참여와 혁신, 2019. 2. 25.자.

◈ 넥슨코리아 노사, "포괄임금제 폐지" 확정

○ 고용안정 등 노조 요구 상당수 수용

- 3월 6일 넥슨코리아와 넥슨 노조는 포괄임금제 폐지・고용안정 방안・유연근무제도 개선・모성보호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안 79개항에 합의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율 96.9%, 찬성 98.8%로 협약이 가결되었다고 밝힘.
- 넥슨코리아 노사는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을 오는 8월부터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음.
- 노사는 조직 해체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해체되는 조직은 3개월 안에 전환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조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내용도 단체협약에 포함하였고, 또한 노사는 복지포인트 확대와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고, 합의하였음.
- 한편으로 이번 합의는 네이버 노사와 대조되며, 네이버는 회사 쪽이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는 '협정근로자' 지정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무산되고, 이후 노조가 2월 20일 첫 쟁의행위를 벌이는 등 갈등 국면에 있었음.
- 대신 넥슨코리아・네오플의 단체협약은 '적용범위'를 두고 논의를 벌인 끝에 일부 직책자(팀장 이상 직책자, 인사・총무・재무 관련 부서 직원, 기타 노사가 협의하여 제외하기로 정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범위 제외 대상자로 하였음.

◈ 서울아산병원 용역 노사 "임금인상・주 5일 근무" 합의

○ 기준시급 970원 올리고 각종 수당 신설

- 3월 5일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시설환경지부와 HDC아이서비스는 서울아산병원 청소・시설환경 용역업체와 노동자들이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기 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음.
-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기준시급 970원(월 20만 2천 원) 인상 △위험수당 4만 원 지급 △근속수당 신설 △2018년 의료기간 인증평가에 따른 위로금 2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함. 또한 설과 추석에 각 10만 원씩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하계휴가비로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음.
- 노사는 기존 주 5일 7시간 30분 근무하고 토요일 2시간을 일하는 주 6일 근무에서 앞으로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해 휴일연장근무를 시행하기로 함. 그리고 노사는 노조사무실을 병원에 마련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연 4천 시

간 적용하기로 했음.

◈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외주업체 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져

○ 당진공장서 50대 노동자 사망 … 함께 작업했던 동료가 발견

-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벨트에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음.
- 현장에서 이씨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은 이날 오후 5시 29분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함.
- 숨진 이씨는 컨베이어벨트 수리를 위해 외부에서 들어온 외주용역업체 소속임.
-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처음이 아니며, 2017년 12월 정기보수를 하던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졌고, 2016년 11월에도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사망함. 그리고 같은 해 12월 열연공장에서 기중기(크레인) 조종사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으며, 2013년 5월에는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

◈ "발병원인 몰라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면 업무상 질병"

○ 근로복지공단 '길랭 · 바레 증후군' 첫 산재 인정

- 2월 25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길랭 · 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진단을 받은 방송국 촬영감독이 1월 공단에서 업무상질병 인정을 받았다고 전함.
- 2018년 8월 밤샘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6년차 방송국 촬영감독인 A씨는 하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길랭 · 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음.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A씨의 평균 업무시간이 주 57시간으로 만성과로에 해당한다"며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육체적 · 정신적 노동강도가 높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힘.

◈ 반올림, 삼성전자 등 노동자 14명 신규 집단산재신청

○ 반올림 "반도체 · 디스플레이 공장 노동자 … 신속히 인정해야"

-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3월 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14명에 대한 집단산재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음.

- 이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들은 유방암, 다발성근염, 폐암, 백혈병, 루프스 등 난치병을 앓는 환자 14명이고, 이들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협력회사 등에 근무하였음.
- 반올림 측은 "지금도 직업병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만 있다"며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관계기관의 신속한 산재 인정을 촉구한다"고 했음.

◈ '태움' 탓 목숨 끊은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판정

○ 근로복지공단 "고 박선욱 간호사 '업무상 질병' 인정"

- 근로복지공단은 3월 7일 고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이 2018년 8월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입 간호사였던 고인이 매우 예민한 성격으로 업무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중환자실에 근무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했다"고 판단했음. 특히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가 죽음의 원인이었음을 분명히 했음.
- 고 박선욱 간호사는 숨지기 이틀 전에 중환자실 환자의 배액관을 빠뜨리는 실수를 하고 다음 날 간호사 선배들과 면담을 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박 간호사의 휴대전화에는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프리셉터 선생님의 눈초리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한 증상이 심해졌다'는 등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음.
- 2018년 발표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간호사의 40.9%가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음.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5.4년에 불과하며, 근무한 지 1년도 안돼 이직하는 간호사의 비율도 평균 33.9%에 달했음.

◈ 근로복지공단, 이주노동자 단속 피하다 발생한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 법원 판례 나온 지 13년 만에 지침 변경

- 근로복지공단은 3월 12일 '불법체류자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처리요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음. 이는 법원에서 2006년 판결이 처음 나온 이후 13년 만에 공단이 지침을 변경한 것임.

- 업무처리요령에서 불법체류로 취업상태인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신(도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가운데 △사업주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임을 인지하고 △단속 시 적극적인 도주 지시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련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또한 공단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밝힘.
-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단속을 피하다가 목숨을 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9명이고, 77명은 부상을 입었음.

◈ 대법원, '일할 수 있는 나이' 60→65세 … 30년 만에 판례 변경

○ 재판부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음.
-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는 게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밝혔음.
- 재판부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2033년 이후부터 65세"라고 설명함.
-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1989년 12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에 조정이 이루어짐.

◈ "철도역 매점 운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 코레일 승소 원심 파기 환송

- 2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음.
- 쟁점은 매점운영자들이 코레일유통의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였음.
-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는 코레일유통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며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다”고 판단했음.

– 이어 “코레일유통은 보수,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이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를 받아야 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매점운영자들은 어느 정도 코레일유통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음.

◈ 환경미화 노동자 낮에 일한다

○ 환경부, 작업안전 지침 발표

– 3월 5일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대를 야간·새벽에서 주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3월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 환경부는 지침에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작업시간대는 현장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음.

– 2015~2017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이고, 이 중 18명은 목숨을 잃었음. 환경미화원들은 밤 8시에 시작하는 야간근무와 새벽 4시에 시작하는 새벽근무를 하는 탓에 시야확보가 어려운 데다, 피로한 탓에 산재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했음.

– 또한 청소차 안전기준을 정하였으며, 청소차 뒤와 옆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상황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그리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나 압축장치에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빗장도 설치하기로 함.

–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전국 환경미화원 4만 3천 명에게 적용되며, 환경부는 지자체장과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음.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3단계 … 민간위탁 노동자 가이드라인 만든다

○ 고용승계·정규직 비율·임금 수준 등 제시

– 2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은 개별 기관들에게 전환 인원 선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쥐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함.

– 개별 기관들은 우선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해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

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 또한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짐.

-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정수(10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정부의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인원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우선 개별 기관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규모를 파악해본 뒤, 그에 맞는 정규직 전환 인원을 확정할 방침임.
-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2019년 1월 현재 17만 7,000명이 전환 결정됐고, 13만 4,000명이 전환 완료되었음.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만 5,000명의 86.3% 수준임.
- 또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2단계 정규직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돼, 2019년 1월 말 현재 3,401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864명이 전환 완료되었음.

◈ 서울시, 청년일자리 제공에 134억 원 투자

○ 플라워트럭, 시민PD … 93가지 청년일자리 1,030개 제공

-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134억 원을 들여 자치구 및 기업들과 협력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30개'를 제공한다고 2월 21일 밝혔음.
- 사업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세 가지로 구분되며, 지원내용은 청년채용기업 인건비지원, 창업 지원, 공공기관·민간기업 연계 일자리 제공 등임.
- '지역정착지원형'은 낙후지역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과 단체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2년간, 1인당 연 2,4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1년간 2,400만 원을 지원함.
- 주요 사업으로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내 식육가공업체·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청년인력을 지원하는 '마장축산물 부처스 육성사업',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청년인력을 지원하는 지역자산 활용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업지원, IT·문화·예술·사회혁신분야에 청년인력을 지원하는 '청년 소셜 크리에터사업' 등을 추진함.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창업공간을 비롯해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최대 2년간 연 1,5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민간취업연계형’은 공공 및 민간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해 직접적인 일 경험은 물론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최대 연 2,250만 원을 채용기업에 지원함.
- 제공되는 일자리는 ‘청년인쇄전문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아동청소년 통합 돌봄사업단’ 등 64개 사업임.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